

2023학년도 2학기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보육실습 기관 선정 및 안내 사항

1. 모집인원: 선착순 40명

2. 지원 자격: 교사 인성 영역 2과목,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 중 필수 9과목 이수자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나.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 이상
다.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3. 보육실습 선정 및 안내사항

가. 기관 선정은 학습자가 직접 알아보셔야 하며, 실습기관의 실습지도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개강 전 미리 실습기관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실습기간 및 시간 (정해진 기간 외에는 실습이 불가능합니다.)

※ 실습은 담당교수의 첫 수업 이후로 가능(개강 수업 전 실습 불가능)

- 2023. 9. 18(월) - 11. 17(금) 이내에만 실습가능 / 6주 240시간

(본인 또는 실습 기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휴원할 경우 분할 실습 가능)

다. 실습기관 선정기준

- 실습 시작 당시 정원이 15명 이상이고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 등급) 어린이집
-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라. 실습지도 교사 기준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 단축 근무자 제외
- 어린이집 원장은 실습 지도교사에 해당하지 않음(2021보육사업 안내) 사례는 제외

마. 실습인정 시간

-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그 외의 실습 인정시간은 허용하지 않음)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으로 함

바. 실습 전 준비 사항

- 보건소에서 전염성 질환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코로나19 접종확인서 또는 PCR 검사 음성 판정 결과 문자(구, 보건증 / 실습기관에 따라 요구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사. 실습 가능 지역: 대구, 경북 일부

아. 실습 유의 사항

- 실습 가능 지역은 본 원(대구대 평생교육원)에서 제한한 것이므로 거주지역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선착순이더라도 본 원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불일치 시 선발하지 않으며 선발 이후에도 실습기관 지역 제한 등 자격 탈락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실습 과목 평가점수 80점 미만일 경우 보육실습 과목 성적 F처리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리엔테이션 시 자료 배부합니다.

4.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개강일에 실시(예정) : 오리엔테이션 자료 및 기타 문서 서식과 관련하여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게시판 → 서식자료실 참고)

5. 학점인정 신청 및 자격증 신청 업무는 개별적으로 기간 및 방법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6. 본 원의 2023학년도 2학기 첫 수업일은 9월 9일(토)이며, 강의실(대면)수업 5회 진행됩니다.

(※ 5회 출석이 원칙이며, 결석할 경우 F처리될 수 있습니다.)

7. 학습비(수업료) 환불은 개강 전 100% 환불 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평가인증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별표]에 의거하여 환불 됩니다.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수업료 환불은 실습 시작과 관계없이 수업 시작 후부터 적용됩니다.**
- **개강 전까지 실습기관을 정하지 못하신 분께서는 이 점 참조하셔서 수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